

목차

1장 서론

2장 본론

1절-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다.

2절-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죽을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3절-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제3장 결론

1장 서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것, 과연 옳지 않은 것일까?

인간은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언젠가 죽는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2020년 사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23.5명으로(OECD 평균 10.3명)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특히 1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였다.1)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이슈는 전부터 뜨거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자살 문제가 뜨거운 화두이다. 청소년의 가장 큰 자살 이유는 학업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이다.2) 이처럼 자살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자살과 안락사는 개인의 선택인 것일까?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자살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텍스트에선 때로는 자살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3)

하지만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또한 자살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4) 도덕의 정의는 무엇일까? 도덕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든다.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의 기준이 무엇일까? 양심이란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각 개인이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서 생긴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자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여론과 관습을 꼭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저자의 자살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인 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필자가 이야기한 자살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작성해보도록 할 것이다. 자살이 왜 허용되어야 하는지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개인에게 있는지 등 죽음은 각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서술해 보겠다.

1) 김덕준, “우리나라 자살률 OECD 1위…하루평균 36명” 부산일보, 작성일:9월 28일 접속:12월 10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121006>

2) 정희서, “치솟는 청소년 자살률, 근본 대책 마련해야” 부산일보, 작성일:11월29일 접속일:12월10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129624>

3) 셸리 케이건(2012),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490쪽.

2장 본론

1절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다.

자살 및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각 개인의 선택이다. 헌법 제37조1항의 내용을 살펴보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⁴⁾ 권리는 헌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면 잠을 잘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잠을 잘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이 어떤 법률을 어긴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제한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살 권리가 있다. 권리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면 밥을 안 먹을 권리도 있다. 살 권리를 인정한다면 죽을 권리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다. 결국, 자살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면 살 권리가 아닌 살 의무가 있다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의무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강제 및 구속이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권리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전혀 다른 뜻의 단어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살 의무가 아닌 권리를 인정해준다면 죽을 자유 또한 존중해주어야만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는 대부분 사람의 사연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생활고를 겪는 다거나 병에 걸렸거나 학업 문제로 힘들어 하거나 등 각자만의 사연이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대부분 사람은 본인이 현재 행복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들이 죽음 이후에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죽음을 존중해 주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상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만 한다.

2절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죽을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죽을 권리란 무엇일까?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⁵⁾ 회복할 가망이 전혀 없는 환자의 예를 들어보자면 말기 암 환자가 있다. 과연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맞을까? 말기 암 환자들은 이미 암세포가

4)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 정보센터, 접속일:12월 11일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5) 죽을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접속일:12월 11일

URL:<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3193&cid=40942&categoryId=3169>

전이되어 내장, 뼈,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 모르핀과 아편 계열 진통제를 사용하여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말기 암 환자들은 몸 상태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 할 때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증 조절이다. 하지만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려 함에도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들도 있다. 호스피스 병동 다큐멘타리를 보았을 때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이들이 이렇게 삶을 연장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연명치료만 받는 환자들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다. 우리나라 국민 2명이 지난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 대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명 존엄사라고 하는데 존엄사는 안락사처럼 적극적으로 바로 죽음을 맞을 수 없다. 연명치료만을 중단하고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도 환자는 고통 속에 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도 전신 마비 환자에게 조력자살이 허용되었다. 7)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추세 속에 우리 또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쩌면 안락사는 환자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연명치료를 받고 싶으면 받게 해주고 편하게 죽음을 맞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남은 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3절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안락사, 조력자살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자살과는 대비된다. 안락사는 보통 가족의 동의를 얻고 시행된다. 하지만 자살은 대부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목숨을 끊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한다면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만약 가장이 갑작스럽게 자살한다면 남은 가족에게 남겨진 충격과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안락사는 주변 사람과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시행된다. 그렇기에 안락사는 주변인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6) 이호길, 한국인 2명, 스위스에서 안락사...107명 대기 중, 머니투데이, 작성일:2019년 3월 6일, 접속일:12월 11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84043>

7) 백종훈, 이탈리아에서 전신마비 환자 '조력자살' 첫 허용, JTBC, 작성일:11월24일, 접속일:12월11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81648>

오히려 안락사가 주변 사람과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락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한부 환자들이다. 우리나라의 사망률 1위는 압도적으로 암이다. 그렇기에 시한부 중에 많은 사람은 암 환자들이다. 모든 치료를 끝내고 호스피스병동으로 온 암 환자의 심리상태는 매우 불안하다. 극심한 우울증을 보이는 환자들도 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기에 가족들도 지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자가 통증에 고통스러워하고 심한 우울감을 보인다면 가족들의 마음은 어찌하겠는가. 어쩌면 차라리 안락사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환자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고 가족들 또한 환자가 고통 속에서 죽는 것보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편하게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다수의 의견과 행복보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 본인이 안락사를 원한다면 죽음을 편히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원하지 않고 연명을 원한다면 연명치료를 계속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선택으로 다수가 행복해진다면 좋은 일이지만 한 개인의 선택이 본인에게는 좋은 점이 없고 다수에게만 좋은 점이 있다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시한부 환자 본인이 동의한 안락사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3장

결론

지금까지 왜 각 개인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죽음은 개인의 선택이다. 둘째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죽을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나도 생명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죽음을 선택하기 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들도 그런 선택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선택을 하기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고 죽음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을 줄이고자 한다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맞고자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법적으로 제한을 하면 안된다.

참고문헌

뉴스 기사

김덕준, “우리나라 자살률 OECD 1위…하루평균 36명” 부산일보, 작성일:9월 28일 접속:12월 10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2&aid=0001121006>

정희서, “치솟는 청소년 자살률, 근본 대책 마련해야” 부산일보, 작성일:11월 29일 접속일:12월 10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129624>

이호길, 한국인 2명, 스위스에서 안락사…107명 대기 중, 머니투데이,작성일:2019년 3월6일, 접속일:12월 11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84043>

백종훈, 이탈리아에서 전신 마비 환자 '조력자살' 첫 허용, JTBC, 작성일:11월24일, 접속일:12월 11일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81648>

사이트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 정보센터, 접속일:12월 11일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죽을 권리, 네이버 지식백과, 접속일:12월 11일

URL:<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3193&cid=40942&categoryId=31693>

도서

셸리 케이건,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2012.